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및 홍보 계획

<'22. 11. 25.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>

□ 운영 계획

○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'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**온라인 발급**할 수 있도록 **서비스 지속 운영**

○ **읍·면·동** 장의 취학의 통지는 **법령에 근거*한 의무사항**으로 **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·인편으로 병행 배부**하여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

* 「초·중등교육법 제17조(취학의 통지 등) 1항」 읍·면·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**12월 20일까지** 취학할 아동의 **보호자에게 취학통지**를 하여야 한다.

⇒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었던 **'학교안내자료' 등 추가 자료 안내** 및 **누락위험성 방지**를 위해 **병행 발급 추진**

□ 내용

❶ 기존 우편·인편 배부

○ **(대상)** '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

○ **(방법)**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(등기) 발송

○ (기간) **'22. 12. 13.(화) ~ 12. 20.(화) 8일간**

❷ 인터넷 발급 서비스

○ **(신청 사이트)**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

※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

○ (기간) **'22. 12. 2.(금) 아침 10시 ~ 12. 12.(월) 밤 24시(11일간)**

○ **(대상)** '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*

***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(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)만 발급 가능**

○ **(방법)** **정부24**(PC 누리집만 가능)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*

* 정부24 화면에서 '자주찾는 서비스' 메뉴 선택, 또는 검색창에 '취학통지서'로 검색

※ 서울 주소지의 경우 「서울시 온라인 민원」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

※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